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2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4 차해영 의원 외 6명

나. 회부일자 : 2025. 11. 18.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5.11.27.)

상정, 심사,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차해영 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기술·문화적 변화 및 ‘사회적 가족’ 확산에 따라 사회적 도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확대하고,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셜다이닝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 1인가구 지원 사업 구체화 및 확대(안 제7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반영(안 제8조)

- 사무 위탁의 법적 근거 명확히 규정(안 제9조)
-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0조~제1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규: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5조, 제15조, 제20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5. 11. 7. ~ 11. 12. (제출의견 없음)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기술·문화적 변화 및 ‘사회적 가족’ 확산에 따라 사회적 도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확대하고,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제5호 소셜다이닝(Social-Dining)을 신설하고
 - 안 제7조제1항제1호를 ‘범죄예방, 생활안전,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제2호를 ‘질병 · 외로움 예방, 돌봄 등 건강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제3호에 ‘소셜 다이닝, 먹거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을 신설하며,

-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으로, “문화·여가 생활”을 “문화·여가·체육 생활”로 하고,
 - 제5호 내지 제11호를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며
 -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 안 제9조에서는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며
 - 안 제10조에서는 제목 “(시행규칙)”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 안 제11조 내지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존속 기한 등을 신설하는 것임.
-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이 전국 41.4% 서울시 44.3% 마포구 48.7%로 초혼연령의 상승,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생활편의성 증가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와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가족 형태의 공동체가 확산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조성에 있어 지역, 즉 사회적 도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1인가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기술·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및 사회적가족 형태의 공

동체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정책방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분야별, 생애주기별 등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원과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센터 및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은 소통과 생활환경에 대한 건강한 독립 가구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시대적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구 안전망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개정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1인가구 복지증진과 건전한 도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1인가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 박완정
연락처	02-3153-8933

참 고 자 료

1.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 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 16.>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마포구 1인가구 현황

○ 연도별 1인가구 변화 추이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년 9월
수(명)	82,892	85,055	86,480	87,506	87,948	87,979
비율(%)	46.4	47.3	48	48.3	48.6	48.7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가구원수별 현황(2025.9. 기준)

구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이상
가구수(명)	180,703	87,979	39,274	28,285	20,088	3,958	1,119
비율(%)	100	48.7	21.7	15.7	11.1	2.2	0.6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1인가구 서울특별시 자치구 현황(2025.9. 기준, 상위 5개구)

1인가구		
순위	자치구	가구수
1	관악구	183,438 (63.5%)
2	강서구	127,586 (54%)
3	송파구	109,695 (53.5%)
4	강남구	98,105 (53.1%)
5	영등포구	97,795 (50.8%)
8	마포구	87,979 (48.7%)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3. 마포구 1인가구 지원사업 현황(2025년 기준)

- 8개 부서(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자치행정과, 도로개선과, 고용 협력과, 보건행정과, 건강동행과) 운영 중임
- '26년부터는 공모사업 추진안하고, 1인가구지원센터 자체 사업만 추진할 예정임

분야	사업명	사업대상	예산액(천원)	부서
계	30개			
안전 (4)	자기방어기술 교육 「셀프 디펜스」	청년/중년층	8,000	기족정책과
	1인가구 「안심홈 3종세트」 지원	전세대	900	기족정책과
	자율방범대 환경보안관 운영	전세대	96,768	자치행정과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전세대	400,000	도로개선과
건강 (10)	신체·심리적 건강한 생활지원 「건강해서 다행1家」	청년/중년층	12,290	기족정책과
	마포쿠키(Cook-key)	중년층	17,000	복지정책과
	원예활동 자조모임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노년층	4,600	복지정책과
	독거노인 치매 프로그램	노년층	4,350	복지정책과
	1인 중년층 보건복지돌봄사업 「더-이음」	중년층	94,350	실뿌리복지과
	주민참여 효도밥상	노년층	2,807,700	어르신동행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노년층	2,522,673	어르신동행과
	남성 1인가구 어르신 밑반찬 지원사업	노년층	13,260	어르신동행과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전세대	7,700	보건행정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노년층	214,172	건강동행과
외로움 (6)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마포1家 사회관계」	청년/중년층	9,100	기족정책과
	홀몸 남성 어르신을 위한 「싱글라이프 마스터」	노년층	6,600	복지정책과
	우리마실 행복나누미	노년층	2,600	복지정책과
	우리마을&Re:Spec 중장년	중년층	70,000	복지정책과
	중장년 프로그램	중년층	1,490	복지정책과
	서울청년센터 마포 「원포인트업클럽」	청년층	10,510	고용협력과
고립 (7)	취약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	청년/중년층	2,000	기족정책과
	함께 응답하라 고고가구	중년층	14,700	복지정책과
	안녕하신家	전세대	7,000	복지정책과
	이웃기웃	노년층	7,500	복지정책과
	마포 안심 똑똑!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전세대	82,500	실뿌리복지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전세대	30,000	실뿌리복지과
	서울청년센터 마포 「든든프로젝트」	청년층	8,600	고용협력과
주거 (3)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내 집을 위한 모든 것」	청년층	5,610	기족정책과
	마포정검다리 주택사업	전세대	885,149	복지정책과
	효도숙식경로당	노년층	76,478	어르신동행과

[출처] 2025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자료

4. 2025년 마포구 동주민센터 1인가구 사업 현황

동명	사업명	사업내용(사업대상 포함)	예산액 (천원)
도화동	도화동 실뿌리복지동행단	- 사업대상: 독거어르신 - 사업내용: 생일잔치, 마포순환열차 나들이, 황톳길 걷기	2,100
용강동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이웃살피미 활동 “올시즌 용강”	- 사업대상: 저소득 취약계층 중장년 및 단독가구 - 사업내용: 계절마다 특별식과 과일 전달하며 안부 확인 및 추석음식 전달	3,000
염리동	1인 가구 밀반찬 지원 사업	- 사업대상: 중장년 1인가구 - 사업내용: 밀반찬 지원	4,950
서강동	서강이네 행복나들이	- 사업대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 사업내용: 나들이 동행	2,908
	아름다운 동행	- 사업대상: 사회적고립위기 1인 가구 - 사업내용: 건강꾸러미 전달	5,050
	함께온(溫)서강 실뿌리복지 프로젝트	- 사업대상: 1인가구 - 사업내용: 동특화 복지공동체를 구성하여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2,800
서교동	아름다운공동체 ‘함께나누미’	- 사업대상: 고독사 위기가구 - 사업내용: ‘함께’ 살아가기, 프룻(Fruit)한 ‘나누미’	5,837
	서교동 실뿌리복지동행단 “실뿌리사랑” 나눔 사업	- 사업대상: 사회적고립가구 - 사업내용: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안전망 강화, 행복밥상 나눔 등	2,100
합정동	합정에서 정들기-행복동행 프로젝트	- 사업대상: 저소득 취약가구 - 사업내용: 원예치료교실 운영, 고궁투어, 정리수납 지원 등	2,000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돌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혼자가 아닌 우리 -합정 행복공작소』	- 사업대상: 저소득 취약계층 - 사업내용: 행복반찬나르미 지원, 합정 문화살롱 사업, 청춘 헤어살롱 사업, 건강백세 운동교실	6,570

동명	사업명	사업내용(사업대상 포함)	예산액 (천원)
망원1 동	행복한 ‘우리’ 망원동네, 슬기로운 온(溫)택트살이	- 사업대상: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 사업내용: 정서적지지 프로젝트	4,360
	망원정(情) 나누기	- 사업대상: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 사업내용: 안부확인 및 생필품 지원	2,100
성산2 동	힐링필링 우리동네탐방	- 사업대상: 독거어르신 - 사업내용: 문화체험(유람선) 및 관계망 형성	1,386
	꽃따라 길따라 가든파티	- 사업대상: 독거어르신 - 사업내용: 월드컵공원에서 생신 잔치를 하며 이웃의 정을 나눔	1,846
	영화로 떠나는 추억나들이	- 사업대상: 독거어르신 - 사업내용: 문화생활 및 식사 지원 등	1,096
상암동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사업 협력활동	- 사업대상: 관내 중장년 1인가구 - 사업내용: 계절김치 전달 및 모니터링	비예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